



Web Contents



2024년 05월 01일 12시 07분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 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2023.06.30 조회수 277 등록자 강나을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1. 자진신고 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

2. 자진신고 대상

- 가. 「지하수법」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나. 「지하수법」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 가. 신고기관 : 목포시청 하수과 (061-270-8519)
- 나. 신고서류 : 붙임 공고 참조

4. 자진신고자 혜택

- 가. 「지하수법」제37조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나. 이행보증금 면제
-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6. 문의사항 : 목포시청 하수과 김철 061-270-3461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환경부공고제2023_369호(「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 신고).pdf (291 hit/ 142.0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용자)사...

다음글
2023년 해양수산부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

MokPo - Si
Web Contents

